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89
----------	-----

2023년 5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8일 박성연 의원 외 24인
2.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3.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4월 24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박성연 의원)

####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감사 대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서울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sup>1)</sup>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수수료 지급 등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개정안의 제안배경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수확대 및 효율적 정부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사회복지기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민간분야 후원금을 재원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 등의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sup>2)</sup>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과 민간기부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무보고 및 운영에 관한 투명성, 효율성 및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고 제고시킬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sup>3)</sup>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고영일 외(201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의 투명화·효율화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재무·회계기준마련,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해 ‘18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
- ‘18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 소관 업무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도 감독 수단으로 규정되었음.

## 나. 사회복지법인 회계감사관련 상위법 규정 현황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sup>4)</sup>, 제34조제4항<sup>5)</sup>, 제45조제2항<sup>6)</sup>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3) 고영일 외(201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의 투명화·효율화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재무·회계기준마련, 보건복지부

4)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동 규칙에서는 회계감사에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 2(회계감사)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2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회계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추진현황

-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동 조례에 따라 반기별 1회 서울시보 고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고시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기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은 총 101개소로 복지정책실 소관 71개소, 시민건강국 소관 2개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8개소임.

-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sup>7)</sup>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중 위탁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7항<sup>8)</sup> 및 제8항<sup>9)</sup>에서는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2017년도 1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한 바 있음.
- 서울특별시 조직기획관에서 발간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탁기관은 직접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을 지정할 수 없고, 사업 주관부서에서 공인회계사회의 추천 등을 통해 감사인을

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정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의 모든 민간위탁 사무는 조직담당관 주관으로 통합회계감사를 받게 되며, 조직담당관이 통합발주 하여 일괄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조직담당관에서는 362개 위탁사무에 대해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9억 8천5백만원임.

### 3 종합의견

-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시설과 이를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투입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회계 투명성도 강조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회계감사실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이미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회계감사를 추진하고 있어 해당 조례 및 현재 시행 중인 지침과 중복·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 요지

##### 1. 수정이유

- 서울시에서는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시설(사회복지시설 포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기시행중인 통합회계감사의 절차 및 기준에 맞춰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감사의 절차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통합회계감사의 절차 및 기준을 반영함 (안 제8조제4항).

####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89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3년 4월 24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서울시에서는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시설(사회복지시설 포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기시행중인 통합회계감사의 절차 및 기준에 맞춰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감사의 절차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통합회계감사의 절차 및 기준을 반영함 (안 제8조제4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아”를 “사회복지시설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수료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시장은 제4항의 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